

강북구 고시 제2026-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미아동 90-45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공공지)을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강 북 구 청 장

1. 결정취지

- 미아동 90-45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공공지)에 대한 변경 결정

2.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에 관한 사항

1) 교통시설(도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69	미아동 74-4	미아동 75-357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B	7	국지 도로	89	미아동 74-4	미아동 90-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520	미아동 92-4	미아동 52-44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3호 (1969.01.18.)	
변경	소로	3	C	6	국지 도로	520	미아동 92-4	미아동 52-44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3호 (1969.01.18.)	가각 전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A	-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69m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3-B	-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폭원 : 7m - 연장 : 89m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황도로 확폭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소로 3-	소로 3-C	-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 - 면적 : 증) 6.2㎡	차량의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

2) 공간시설(공공공지, 공원)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미아동 89-48	23.0	감) 23.0	-	강북구 고시 제2003-100호 (2003.11.20.)	시설폐지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 면적 : 감) 23.0㎡	효율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 구역 내 편입되어있는 공공공지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미아동 89-6	미아동 90-63	807.0	증)12.17	819.17	서울시 고시 제2002-192호 (2002.05.25.)	위치 및 면적변경

■ 공원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어린이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 위치 변경 : 89-6번지→90-63번지 - 면적 변경 : 807.0㎡→819.17㎡ (증12.17㎡)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구역 내 공원 위치 이전 및 공원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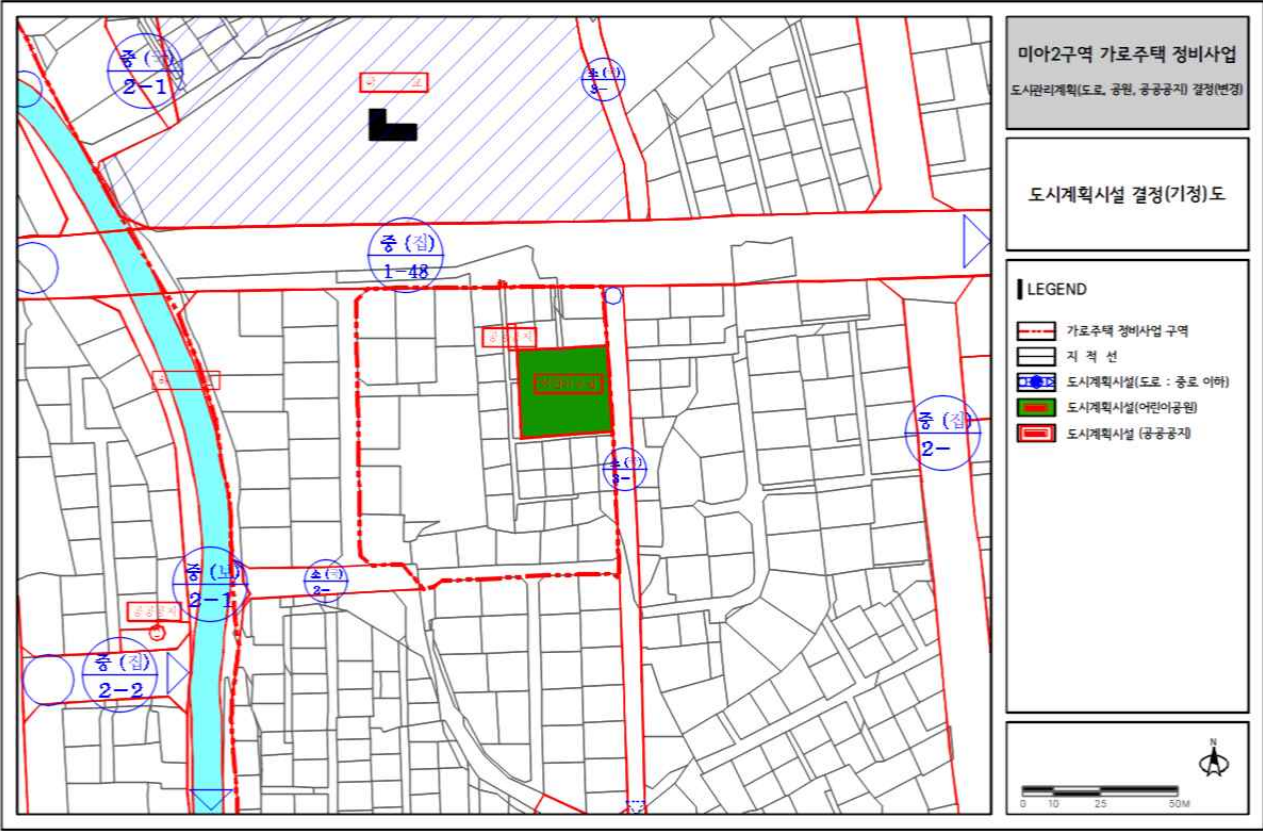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7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기 정



○ 변 경

